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알려드립니다

SH공사에서는 콜센터(02-1600-3456)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청약자격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5.07(목)**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한국일보, 서울신문 및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은 2015.05.08(금)부터 SH공사 1층 분양팀 및 상계동 견본주택[견본주택 운영기간에 한함]에서 배부합니다.**
  - ※ 팸플릿 배포처 : SH공사 1층 분양팀(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상계동 견본주택[견본주택 운영기간에 한함]
- 견본주택은 상계동 현장에서 **2015.05.09(토)~2015.05.11(월)[운영시간 : 10:00~17:00]까지만 운영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2015.05.07(목) 13시부터 운영합니다.**
- 상계동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향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분양단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상의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상계동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주택'을 의미함.
- 금회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건축공정률 60%를 초과한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중 1층(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분양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주민등록표 기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 주택가격(bal코니 확장비용 및 선택품목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수도권외 거주자는 청약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호의 사람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②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인터넷신청)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해당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청약자격을 SH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분양계약 해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SH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유형별(특별분양, 일반분양) 순위별 청약접수방법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유형 및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후 무주택여부, 재당첨조회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주택공급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배정)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공급유형별,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무작위로 추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주택법령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되고, 「주택법」에 따라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및 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의「주택형」또는「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청약 또는 청약자격 허위기재 등에 따른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SH공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신청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 자격(제1·2 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 제1·2순위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의2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신청에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사업용지를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아 주택법 용지구분상 공공택지가 아니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3호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가능한 날(2015.07.27.)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고,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에 의거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주,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당첨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제1,2순위로 신청하여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 적용이 배제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관련법령에 따름.

## 1 사업주체, 건설위치,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명

사업주체	단지명	건설위치	건설현황			시공업체	감리회사명	난방방식
			계	분양	임대			
에스에이치공사	상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2-91번지 일대	457	228	229	진흥기업(주) 대아건설(주)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 사무소 (주)진전기엔지니어링	지역난방

## 2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공급세대수

### 공급대상

단지명	주택유형	분양주택코드 (주택관리번호 및 모델번호)	주택형	발코니 유형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분양 건설 세대수	분양세대수								최고층수	1층 배정 세대수	
						공급면적(A)			그밖의 공용면적(B)					계약면적(A+B)	계	특별분양								일반분양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소 계					다 자 녀	노 부 모 부 양	신 혼 부 부	생 애 최 초	기 타				
																					소 계			
계												228	228	144	23	11	34	45	31	84	-	12		
상 국 계 민		2015000366-01	059.0000H	확장	59A	86.12	59.75	26.37	4.44	35.35	125.91	38	76	76	51	8	4	11	15	13	25	13	4	
		2015000366-02	059.0000N	오픈발코니 (비확장)	59A	86.12	59.75	26.37	4.44	35.35	125.91	38	10	10	6	1	-	2	2	1	4	15	-	
		2015000366-03	084.0000H	확장	84A	121.36	84.13	37.23	6.25	49.78	177.39	54	44	126	79	12	6	19	26	16	47	15	8	
					84B	122.73	84.53	38.20	6.28	50.01	179.02	54	56											
					84C	121.02	84.75	36.27	6.30	50.14	177.46	55	26											
		2015000366-04	084.0000N	오픈발코니 (비확장)	84A	121.36	84.13	37.23	6.25	49.78	177.39	54	8	12	8	2	1	2	2	1	4	15	-	
84C	121.02				84.75	36.27	6.30	50.14	177.46	55	4													
2015000366-05	084.0000D	복층	84D	124.04	84.55	39.49	6.28	50.03	180.35	54	4	4	-	-	-	-	-	-	-	4	-	-		

- 위 공급대상의 '평면유형'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일반분양세대수는 특별분양대상자의 청약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공급대상 동의 최고층수의 범위를 표시한 것임(동·호수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 평면유형내에 설치되는 면적(발코니 면적 등 포함)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수 조정 등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음[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각 주택형별 평면유형은 청약자가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 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내에서 평면유형,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됨.
- 금회 공급되는 공공주택 관련 특이사항
  - 상계동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음.
  - 분양주택 세대는 확장형세대, 오픈발코니형세대, 복층형세대 세가지로 분류됨.
  - 오픈발코니형세대는 비확장형세대로 기존 비확장과 달리 발코니에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타입임.
  - 복층형세대는 102동 3호라인 5층, 7층에 2세대, 103동 2호라인 10층, 12층에 2세대 총 4세대임.
  - 오픈발코니형 세대를 제외한 비확장세대 타입은 없음.

### 3 분양주택가격 및 납부방법

#### ●● 세대별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 본 주택가격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평면유형, 층·향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가격으로 세대별 주택가격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위 주택가격에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형에 당첨된 경우 주택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확장비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잔금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잔금 포함)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열쇠불출이 불가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입주금은 아래의 순서로 수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금 → 발코니확장 계약금 → 선택품목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발코니확장 잔금 → 선택품목 잔금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음.

■ 세대별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 상계동

(단위 : 천 원)

동	호	주택형	평형유형	주 택 가 격					발코니 확 장 비 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15.09.25)	중도금2차 ('15.11.25)	잔 금 (입주시)	
0101	0114	059.0000H	59A	275,974	27,597	41,396	41,396	165,585	3,810
0101	0115	059.0000H	59A	275,974	27,597	41,396	41,396	165,585	3,810
0101	0116	059.0000H	59A	275,974	27,597	41,396	41,396	165,585	3,810
0101	0214	059.0000H	59A	282,975	28,297	42,446	42,446	169,786	3,810
0101	0215	059.0000H	59A	282,975	28,297	42,446	42,446	169,786	3,810
0101	0216	059.0000H	59A	282,975	28,297	42,446	42,446	169,786	3,810
0101	0313	059.0000H	59A	282,975	28,297	42,446	42,446	169,786	3,810
0101	0314	059.0000H	59A	282,975	28,297	42,446	42,446	169,786	3,810
0101	0315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316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413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414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415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416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513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514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515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516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613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614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615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1	0616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1	0713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1	0714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1	0715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1	0716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1	0813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1	0814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1	0815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1	0816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1	0913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1	0914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1	0915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0916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013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1	1014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1	1015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016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단위 : 천 원)

동	호	주택형	평형유형	주 택 가 격					발코니 확 장 비 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15.09.25)	중도금2차 ('15.11.25)	잔 금 (입주시)	
0101	1113	059.0000N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
0101	1114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1	1115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116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213	059.0000N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
0101	1214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215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216	059.0000N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
0101	1313	059.0000N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
0101	1314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315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316	059.0000N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
0101	1415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416	059.0000N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
0101	1515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1	1516	059.0000N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
0102	0101	084.0000H	84B	362,293	36,229	54,344	54,344	217,376	4,524
0102	0102	084.0000H	84A	361,514	36,151	54,227	54,227	216,909	4,591
0102	0103	084.0000H	84A	361,514	36,151	54,227	54,227	216,909	4,591
0102	0201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2	0202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2	0203	084.0000H	84A	373,138	37,313	55,971	55,971	223,883	4,591
0102	0301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2	0302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2	0303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2	0304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2	0401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0402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2	0403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2	0404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2	0501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0502	084.0000H	84A	389,411	38,941	58,412	58,412	233,646	4,591
0102	0503	084.0000D	84D	432,067	43,206	64,810	64,810	259,241	6,236
0102	0504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2	0601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0602	084.0000H	84A	389,411	38,941	58,412	58,412	233,646	4,591
0102	06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07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2	0702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0703	084.0000D	84D	432,067	43,206	64,810	64,810	259,241	6,236

(단위 : 천 원)

동	호	주택형	평형유형	주 택 가 격					발코니 확 장 비 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15.09.25)	중도금2차 ('15.11.25)	잔 금 (입주시)	
0102	07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08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2	0802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2	08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0901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2	0902	084.0000N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
0102	09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09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1001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2	1002	084.0000N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
0102	10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10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1101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2	1102	084.0000N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
0102	11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11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2	1201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2	1202	084.0000N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
0102	12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12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2	1301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2	1302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2	13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13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2	1401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2	1402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2	14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14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2	1501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2	1502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2	15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2	15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0102	084.0000H	84A	361,514	36,151	54,227	54,227	216,909	4,591
0103	0103	084.0000H	84A	361,514	36,151	54,227	54,227	216,909	4,591
0103	0104	084.0000H	84B	362,293	36,229	54,344	54,344	217,376	4,524
0103	0202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3	0203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3	0204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3	0301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3	0302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단위 : 천 원)

동	호	주택형	평형유형	주 택 가 격					발코니 확 장 비 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15.09.25)	중도금2차 ('15.11.25)	잔 금 (입주시)	
0103	0303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3	0304	084.0000H	84B	373,917	37,391	56,088	56,088	224,350	4,524
0103	0401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3	0402	084.0000H	84A	389,411	38,941	58,412	58,412	233,646	4,591
0103	0403	084.0000H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4,591
0103	04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3	0501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3	0502	084.0000H	84A	389,411	38,941	58,412	58,412	233,646	4,591
0103	0503	084.0000N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
0103	05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3	0601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3	0602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3	0603	084.0000N	84A	382,437	38,243	57,366	57,366	229,462	-
0103	0604	084.0000H	84B	383,216	38,321	57,482	57,482	229,931	4,524
0103	07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0702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3	0703	084.0000N	84A	389,411	38,941	58,412	58,412	233,646	-
0103	07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08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0802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3	0803	084.0000N	84A	389,411	38,941	58,412	58,412	233,646	-
0103	08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09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0902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3	09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3	09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0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002	084.0000D	84D	443,691	44,369	66,554	66,554	266,214	6,236
0103	10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3	10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1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103	084.0000H	84A	396,386	39,638	59,458	59,458	237,832	4,591
0103	1104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2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202	084.0000D	84D	443,691	44,369	66,554	66,554	266,214	6,236
0103	1203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3	1204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3	13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303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3	1304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단위 : 천 원)

동	호	주택형	평형유형	주 택 가 격					발코니 확 장 비 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15.09.25)	중도금2차 ('15.11.25)	잔 금 (입주시)	
0103	14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402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3	1403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3	1404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3	1501	084.0000H	84B	390,190	39,019	58,529	58,529	234,113	4,524
0103	1502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3	1503	084.0000H	84A	403,360	40,336	60,504	60,504	242,016	4,591
0103	1504	084.0000H	84B	397,165	39,716	59,575	59,575	238,299	4,524
0104	1201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4	1202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4	1301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4	1302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4	1401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4	1402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4	1501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4	1502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5	0104	084.0000H	84C	383,635	38,363	57,545	57,545	230,182	4,654
0105	0105	084.0000H	84C	383,635	38,363	57,545	57,545	230,182	4,654
0105	0106	059.0000H	59A	282,975	28,297	42,446	42,446	169,786	3,810
0105	0204	084.0000H	84C	390,609	39,060	58,591	58,591	234,367	4,654
0105	0205	084.0000H	84C	390,609	39,060	58,591	58,591	234,367	4,654
0105	0206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5	0304	084.0000H	84C	397,584	39,758	59,638	59,638	238,550	4,654
0105	0305	084.0000H	84C	397,584	39,758	59,638	59,638	238,550	4,654
0105	0306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5	0307	059.0000H	59A	289,976	28,997	43,496	43,496	173,987	3,810
0105	0404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405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406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5	0407	059.0000H	59A	295,226	29,522	44,284	44,284	177,136	3,810
0105	0504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505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506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5	0507	059.0000H	59A	300,477	30,047	45,072	45,072	180,286	3,810
0105	0604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605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606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5	0607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5	0704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705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706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단위 : 천 원)

동	호	주택형	평형유형	주 택 가 격					발코니 확 장 비 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15.09.25)	중도금2차 ('15.11.25)	잔 금 (입주시)	
0105	0707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5	0804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805	084.0000H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4,654
0105	0806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5	0807	059.0000H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3,810
0105	0904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0905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0906	059.0000H	59A	310,978	31,097	46,647	46,647	186,587	3,810
0105	0907	059.0000H	59A	310,978	31,097	46,647	46,647	186,587	3,810
0105	1004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1005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1006	059.0000H	59A	310,978	31,097	46,647	46,647	186,587	3,810
0105	1007	059.0000H	59A	310,978	31,097	46,647	46,647	186,587	3,810
0105	1104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1105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1106	059.0000H	59A	310,978	31,097	46,647	46,647	186,587	3,810
0105	1107	059.0000N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
0105	1204	084.0000N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
0105	1205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1206	059.0000H	59A	310,978	31,097	46,647	46,647	186,587	3,810
0105	1207	059.0000N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
0105	1304	084.0000N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
0105	1305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1306	059.0000H	59A	310,978	31,097	46,647	46,647	186,587	3,810
0105	1307	059.0000N	59A	305,727	30,572	45,859	45,859	183,437	-
0105	1404	084.0000N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
0105	1405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0105	1504	084.0000N	84C	404,558	40,455	60,684	60,684	242,735	-
0105	1505	084.0000H	84C	411,532	41,153	61,730	61,730	246,919	4,654

●● 주방형 불박이 가전제품(입주자 선택품목)

- 주방형 불박이 가전제품은 공정상 2015.07.29(수)까지 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선택품목을 신청한 세대수를 반영하여 신청 즉시 선택품목의 생산 또는 제작이 시작되므로 신청 후 취소나 변경 불가.
- 주방형 불박이 가전제품 금액(선택품목금액)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선택품목금액은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선택품목(전기오븐 및 식기세척기) 미신청 세대는 수납공간으로 제공됨.(쿡탑은 기본설치 품목임)
- 준공시까지 선택품목 설치기간이 촉박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시 선택품목 해당부분의 시공이 진행 중일 수 있음.
- 주방형 불박이 가전제품의 제조사와 제품명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별도의 통지 없이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전용면적별 아래 적용대상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 적용세대의 경우 신청하더라도 무효임.

■ 품목 및 적용대상

품 목	적용 대상	신청시기
전기(복합)오븐	전용 59m <sup>2</sup> ,84m <sup>2</sup>	주택분양 계약시
식기세척기	전용 84m <sup>2</sup>	

■ 선택품목내역 및 금액 : 품목별 1세대 1건만 선택가능

품 목	전기오븐(동양매직)		식기세척기(동양매직)	
	1번	2번	1번	2번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EONB-430M	EONB-420M	DWA-7303B	DWA-7501B
선택품목금액 (부가세포함)	627,000원		462,000원	

※ 제품사양은 분양팸플릿 참고

●● 주택가격 납부방법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납부비율

구 분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 금
주택가격	10%	15%	15%	60%
발코니확장비용	10%	-	-	90%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입주자 선택품목)	10%	-	-	90%

■ 납부기한

구 분	납 부 기 한
계약기간(계약금 납부기간)	2015.07.27(월) ~ 2015.07.29(수)
중도금 1차 납부기한	2015.09.25(금)
중도금 2차 납부기한	2015.11.25(수)
잔금납부기한(입주지정기간과 동일)	2016.03.17(목) ~ 2016.05.15(일)

-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금은 납부기한(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4.5%(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 주택가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1개월 이하 연8.5%, 3개월 이하 연9.5%, 3개월초과 연10.5%의 연체료(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가 가산됨.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 없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실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 잔금(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잔금포함)은 입금 즉시 선납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반환청구가 불가하오니 납부기한 전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요망
  - ※ 명의변경 시, 잔금(발코니확장, 선택품목 포함)까지 완납했을 경우 명의변경 절대 불가하며, 기 납부액은 반환 처리 불가함.

- 계약체결후 해약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비용 및 선택품목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함.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주택분양계약서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SH공사 수납팀에 확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납부금 조회란에서 발급받아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임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 수령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납팀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Fax 02-3410-7514)하시기 바람.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금 고지서(중도금 및 잔금고지서) 발급 방법**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아파트 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중도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

- 분양금 과오납시에는 과오납반환신청서(공사 비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계약자 신분증 사본1부, 계약자 통장사본 1부를 수납팀에 제출(fax.02-3410-7514)하시기 바람.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과오납신청서 발급 방법**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고객센터서비스 → SH자료실 → “반환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다운로드

※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4 입주자에 대한 융자(국민주택기금)지원 내용

- 금회 공급하는 전용85㎡이하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주택으로 세대별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잔금의 일부로 대체가능하며, 대환(대출)시 상환 조건은 대환일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함.[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 변경)일 전날까지는 SH공사에서 차입한 이율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고 대환일에 입주자가 융자금을 승계하며, 대환일 이후 적용이율은 3.3% 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됨]

전용면적 (㎡)	대출금액(천원)	대 환 전 적용이율	대 환 후 적용이율	상환조건	상환(대환)기한
59	55,000	5.0%	연3.3%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비교하여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
84	75,000	6.0%			

※ 국민주택기금 대출(대환) 신청자가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포털 홈페이지 <http://nhf.molit.go.kr> 참조)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2주 이내 등기소에 신청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2주~6주 후에 완료됩니다. 대출(대환) 받으실 경우에는 건물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대출(대환)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대환)하지 않고 입주(열쇠수령)하는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대출(대환) 전일까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월부금)가 부과 됩니다.
- 주택가격 중 잔금에는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시상환 또는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1. 일시상환하는 경우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용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고 일시상환 할 경우에는 아래 해당은행의 상환계좌로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열쇠수령)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계좌에 입금된 국민주택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금액을 초과 또는 부족하게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시상환 후 재대출은 불가함.

국민주택기금 일시상환 은행 및 계좌번호
상계동 공공분양주택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502-703656 (예금주 : 우리은행 SH공사지점)

- 국민주택기금(용자금)은 선납할인이 없음.
- 상기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주택분양 계약자가 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 평일(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에 국민주택기금을 일시상환하여야만 월부금(국민주택기금 이자)이 발생하지 않음.
- 입주전(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 일시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변경)일 전날까지 국민주택기금 이자(월부금)가 가산되고 국민주택기금 상환(납부)기한일(잔금 납부기한 또는 건물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날부터 60일 이내,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시행시 안내) 익일부터 연체료가 가산됨.

### 2. 대환(대출) 받는 경우

- 국민주택기금(용자금)은 계약자(명의변경자) 앞으로 대출되어 잔금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대환(대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우리은행에 직접 용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고 은행에서 SH공사로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함.(대출문의 : 우리은행 SH공사지점 ☎02-3412-4681)
- 국민주택기금 대환이 되지 않는 경우
  - 국민주택기금 대출(대환)승인 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
  - 국민주택전세자금 대출 기보유자 등
- 국민주택기금 이자(월부금) 납부안내
  - 국민주택기금(용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시상환 또는 대환(대출)승인 전일(또는 국민주택기금상환 종료기한)까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가 월부금으로 부과되어 매월 20~25일경 분양받으신 물건지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며, 매월말일이 납부기한임.
- 주택분양 계약자는 주택가격에 포함된 국민주택기금(용자금)을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용자금에 대한 차주명의(借主名義)를 변경하거나 용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일부터는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개시 약 2주전에 국민주택기금(용자금)에 관해 별도 안내문을 계약서상 주소지 또는 주소변경 신청한 주소지로 발송예정임.
- 국민주택기금(용자금) 관련 문의 : SH공사 콜센터(☎1600-3456)

##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공통사항

- 금회 분양하는 특별분양 및 전용85㎡이하 일반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의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수도권 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동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일순위안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수도권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일반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함.
- 지역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1>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5.07)	100%	-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자	•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2014.05.08일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1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분양

-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배정하며,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5.07)	50%	50%	서울특별시 거주자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특별분양 청약접수결과 주택형별 미달물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 선정없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각 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제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 7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는 금회 특별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특별분양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분양 당첨자 선정의 기회가 자동부여되지는 않으며(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는 다름) 낙첨시 별도의 일반공급신청이 필요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공급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는 전용85㎡이하 분양주택(국민주택)에 신청이 불가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2you.com)→ 당첨사실 조회 → 과거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 → 조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 공급신청자 및 세대주·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수 있음(단, 청약자 본인에 한하며, 조회일 직전 영업일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당첨사실만 조회가능함)

## ●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 적용

- **적용대상**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전용59㎡형 일반분양
- **조사대상**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전용59㎡형 일반분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한 만19세 이상인자 전원
- **조사대상 소득의 종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전용59㎡형 일반분양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아래 <표2>의 소득적용 기준 및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불가, 통장효력상실, 청약통장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검증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것으로 복잡하던 제출서류가 간소화됨
- **공급신청자의 자산보유 및 소득금액 산정시점 및 적용**
  - 입주자격 심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 요청하여 제공받은 개인별 월평균소득 및 자산보유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소득 및 자산 검색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함. 만일 부적격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없이 부적격 처리함.
  - 공급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조사대상자의 의무**
  - 우리공사가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표2> 소득적용 기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전용59㎡형 일반분양을 신청하는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분양 공급신청자는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라 하더라도 소득심사시 이를 포함함.
-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초과시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을 받게 됨.
- 생애최초 특별분양 및 전용59㎡형 일반분양은 배우자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구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특별분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4,734,603원이하	5,224,645원이하	5,560,026원이하	5,972,737원이하	6,385,448원이하	6,798,159원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3원이하	6,269,574원이하	6,672,031원이하	7,167,284원이하	7,662,537원이하	8,157,790원이하
생애최초 특별분양 및 전용59㎡ 일반분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4,734,603원이하	5,224,645원이하	5,560,026원이하	5,972,737원이하	6,385,448원이하	6,798,159원이하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분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3원이하	6,269,574원이하	6,672,031원이하	7,167,284원이하	7,662,537원이하	8,157,790원이하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경우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798,159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경우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8,157,790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95,253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
-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도 포함)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전 세대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노부모 특별분양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세대주(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금액 적용 시점 및 소득의 조사방법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되는 세대원별 합산소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 자료를 적용 함

▶ 소득의 조사방법

구분	항 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 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국세청(종합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일모아'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종합소득), 농림축산식품부(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임업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종합소득)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종합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종합소득)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급여), 사학연금관리공단(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관리공단(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부적격자 소명 안내

- 소득조사 결과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명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상기 소득의 조사 방법 표의 "소득자료 출처"공적자료 원천기관의 공적자료를 수정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만일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자세한 사항은 추후 부적격자 발생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전용59㎡형 일반분양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아래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불가, 통장효력상실, 청약통장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전용59㎡형 일반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li>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자동차 : 27,940,000원 이하</li>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 X {1-(0.1 X 경과년수)}</li> </ul>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주거용 건물	구분	가액산정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주거용 건물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구 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math>\{1-(0.1 \times \text{경과년수})\}</math></li> </ul> </li> <li>•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ul> </li>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ul>

■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임.

[노부모 특별분양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세대주(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자산도 합산]

- 자동차의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 공유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보유자산 확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기준을 적용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 방 문 확 인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http://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 취 · 등록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으로 확인하며,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5년식 자동차를 201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 다자녀 특별분양

### ■ 다자녀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단지명	주택형	계	해당 (서울특별시 거주자)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합계		23	12	11
상계	059.0000H	8	4	4
	059.0000N	1	1	-
	084.0000H	12	6	6
	084.0000N	2	1	1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6.05.09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가구원수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별로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타 시·도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분양함.

### ■ 배점기준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 (1996.05.09이후 출생)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 (2009.05.09~2015.05.07기간 중 출생)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만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만40세이상 : 1975.05.08 이전 출생 *만35세이상 : 1980.05.08 이전 출생
		공급신청자가 만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시·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2),(3)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단지명	주택형	계	해 당	수도권
합계		11	11	-
상계	059,0000H	4	4	-
	084,0000H	6	6	-
	084,0000N	1	1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어야 함
    - 피부양 직계존속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만60세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를 적용하지 않음
    -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예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표4〉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거주자 배정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분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으로 신설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낙첨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의 기회가 자동 부여되지 않음(별도의 일반공급 신청이 필요)

●● **신혼부부 특별분양**

■ **신혼부부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단지명	주택형	계	해 당	수도권
합 계		34	34	-
상계	059.0000H	11	11	-
	059.0000N	2	2	-
	084.0000H	19	19	-
	084.0000N	2	2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당첨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분양대상단지의 입주가 촉박하여 입주시까지 임신 지속시는 입주개시일 이후 출생이나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처리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분양주택 계약을 해제함.
-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로서 <표2> 소득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분양함)
- 경쟁이 있을시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신혼부부 특별분양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미성년 자녀수 → 추첨]	
1)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신혼부부 특별분양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서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인정
- 현재 배우자와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중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생애최초 특별분양

■ 생애최초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단지명	주택형	계	해 당	수도권
합계		45	45	-
상계	059.0000H	15	15	-
	059.0000N	2	2	-
	084.0000H	26	26	-
	084.0000N	2	2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 ②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자)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공급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중 종합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자는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공급신청자 본인의 5년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제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 함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이하인 자로서 <표2> **소득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생애최초 특별분양 공급신청자는 과거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라 하더라도 소득심사시 이를 포함함.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거주자 배정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분양함)

●● **기타 특별분양**

■ **신청자격**

- **기관추천 특별분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한 분(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분양은 미적용)
  - ※ 추천기관 현황(예시) : 유공자(서울지방보훈청), 장애인(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소기업근로자(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 다문화가족(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장기복무군인(국방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분양 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5.05.13.(수)~2015.05.14.(목)]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기관추천 특별분양 자격포기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기]**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어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항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분양(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분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호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 일반분양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2)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 1)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중 1인(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제외함)
  -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친척·지인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 2) 무주택(주택소유 여부)등 확인 대상자 범위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 ② 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전용59㎡형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자로서 <표2> 소득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공급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공급하며, 선순위 신청자에게 배정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시 차순위 신청자에게 공급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1순위 경쟁시에는 “순위요건” 및 <표4>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르며, 각 목에 따른순차안에서 경쟁시에는 추첨에 의한다.
- 2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순 위	순위요건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표4〉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순위에 한함)

가.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전용85㎡이하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 공통)

구 분	내 용
무주택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가능 -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 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예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무주택기간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무주택세대 구성원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날(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주택소유현황 조회방법 : 2015.07.14(화) 17:00 이후 게시예정(공사 홈페이지→인터넷청약→공인인증서 로그인→ 주택소유현황조회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확인대상
  1.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4.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6 신청일정 및 장소

### ❖ 1층 분양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에 한함)

- 1층(최하층)분양주택 우선배정 안내
- 금회 분양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에 한하여 1층(최하층) 분양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1층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고, 신청 주택형에 1층 배정물량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최하층 신청이 무효처리됨.
-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 · 호수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
- 1층 분양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분양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구 분	1층(최하층) 분양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일반분양 및 특별분양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만65세 이상인 사람</b>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b>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b>
신청방법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분양, 일반분양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방문 및 인터넷으로 1층 우선배정 신청을 하고,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시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격인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등

주택형	1층(최하층) 우선배정 해당 분양주택
전용59㎡	101동(3세대) – 114호, 115호, 116호 105동(1세대) – 106호
전용84㎡	102동(3세대) – 101호, 102호, 103호 103동(3세대) – 102호, 103호, 104호 105동(2세대) – 104호, 105호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접수일정

구 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방법	
특별 분양  청약 접수	기관추천특별분양	2015.05.13(수) ~05.14(목)	• SH공사 분양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b>방문인터넷청약</b> (인터넷신청불가) 09:30~17:30
	다자녀 특별분양	2015.05.13(수)	•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 • SH공사 분양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b>인터넷청약</b> (09:00~17:30) 또는 방문인터넷청약 (09:30~17:30)
	신혼부부 특별분양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2015.05.14(목)		
	생애최초 특별분양			
일반 분양  청약 접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 1순위	2015.05.27(수)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www.apl2you.com)	<b>인터넷청약</b> (08:00~17:30) 또는 <b>가입은행신청</b> (은행창구신청은 09:00~16:00)
	2순위(1순위제외자)	2015.05.28(목)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보유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보유자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www.apl2you.com)	

• 상기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특별분양은 접수일자별 신청결과 신청당일 해당지역 및 수도권지역의 합계한 접수건수가 신청대상물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신청형의 신청지역은 다음날부터 신청을 받지 않으며, 당첨자 선정은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공급구분별 당첨자 선정기준에 따름.

단, 공급구분별 마지막 접수일자까지 접수건수가 공급세대수를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접수하지 않음.

- 일반분양 세대수는 특별분양 대상자 청약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반분양 각 순위자는 순위별로 지정된 신청 접수일에만 한하여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특별분양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여부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상단 고객센터 “공고 및 공지” 에, 일반분양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 여부는 주택청약사이트【www.apl2you.com → 청약접수 경쟁률】에 각 순위접수 당일 21:00 이후에 게시되며,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분양은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기관에 신청접수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분양대상자 명단을 기한(2015.05.12까지)내에 SH공사로

제출(통보)한 자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분양유형별)'를 지참하여 SH공사에 2015.05.13.~2015.05.14. 기간내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 신청접수하여야 함

- 방문신청시 특별분양신청서 등 신청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30까지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7. 신청방법」참조

■ 청약신청금

대 상	청약신청금 (전주택형)	청약신청금 처리방법
일반분양 2순위 신청자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 접수은행 뱅킹계좌에서 자동출금되며, 당첨자발표일 다음 영업일에 출금계좌로 반환됨.</li> <li>• 은행창구청약 :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당첨자발표일 다음 영업일 이후 접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환불받으셔야 함(단, 본인 명의의 접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li> </ul>

※ 참가은행 : 우리 · 국민 · 외환 · 기업 · 신한 · 하나 · 한국씨티 · 농협 · 수협 · SC제일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2순위 청약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의 잔액 및 1회 이체한도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창구 신청금 창구 환불시 구비서류
  - ① 본인 ·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서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②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신청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제3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7 신청방법

- 공급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다만,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 시 예외)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거주여부, 신청순위, 주택소유여부 및 기간, 해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되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통장호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게됨을 유의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 인터넷 신청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 신청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은 방문신청시 우려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인터넷 청약신청장소(일반분양은 가입은행 또는 거래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함.

■ 신청시간

특별분양 인터넷 청약시간	09:00~17:30
일반분양 인터넷 청약시간	08:00~17:30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인터넷 신청방법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인터넷 신청방법**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해당신청일에 개인 공인인증서 및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신청 가능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셔서 입력된 자료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후 개인 공인인증서 등으로 청약가능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청약 시 차질없으시길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SH공사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인터넷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인적사항 작성/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일반분양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신청순위별 신청방법에 따라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b>신청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청약통장가입은행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li> <li>- [2순위] 청약통장 취급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자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li> </ul>
<b>신청방법 및 절차</b>	<b>1순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li> <li>-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li> </ul>
	<b>2순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li> <li>-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 보유자]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li> </ul>
<b>신청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00~17:30</li> <li>※ 17:30은 신청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접수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 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li> </ul>

■ 신청시 유의사항

- 위 신청접수시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자께서는 청약신청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통장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무주택여부 및 기간,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며,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되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하여 SH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발생시 SH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특별분양주택 신청시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명 등을 오기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가입한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포함)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 방문인터넷 신청(기관추천 및 특별분양 신청자중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기관추천 및 특별분양 신청자중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 특별분양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방문신청시 SH공사 전산시스템(방문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입력을 대행하고 있으니 방문 신청자는 전산으로 작성(입력)된 신청서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방문신청서의 신청내용과 전산작성(입력) 신청서의 신청내용이 상이한 경우 전산작성된 신청서의 신청내용으로 확정하며, 신청시 착오입력 및 신청내용의 오기로 인한 낙점 또는 부적격 당첨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신청시간 및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SH공사 (해당 신청일별 09:30~17:30)

-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다만,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 시 예외)

### ■ 신청방법

- 해당신청일에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청장소(SH공사)에 직접 방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신청)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내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되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음.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분양대상자는 당첨자 발표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내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내 서류 미제출 및 신청자의 착오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또한 신청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등으로 신청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임.
- 특별분양주택 청약신청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명 등을 오기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가입한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포함)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 방문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분양대상자는 청약신청시 신청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대리신청시 구비서류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는 신청접수시 청약자격확인만 하고 되돌려 드림] 자격증빙서류는 당첨자 발표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기관추천 특별분양 대상자는 청약신청시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신청시 구비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첨자 선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은 물론이고, 서류 위조 등의 부정한 행위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어 검찰 고소(고발) 절차 이행이 수반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방문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분양유형별)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① 특별분양신청서	본인	• 신청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li> <li>•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li>※ 동의서 확인방법 :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센터서비스→공고및공지→'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li> </ul>
기관추천 대상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KB부동산→주택청약→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li> <li>•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서비스 접속(www.ap2you.com)→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li> <li>•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li> </ul>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에 인정받고자 하는 주소변동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④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④, ⑤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	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⑤제출

▶ 방문인터넷신청시 구비서류(신청주체별)

구분	구비사항	비고
본인 신청시	① 본인(청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도장(서명가능)	
배우자 신청시	① 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청약자 도장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	신청장소에 비치
	② 본인(청약자) 인감도장	신청자 구비
	③ 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	
	④ 본인(청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은행창구 청약신청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 **신청시간** : 은행창구 청약 가능시간은 09:00~16:00 이며,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은행창구에서 방문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장소** : 1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2순위(거래은행)
- **구비서류** : 아래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주택공급신청서	양식 청약장소 비치
	②청약통장	
	③예금인장(1순위 청약시) 또는 본인 서명	
	④청약신청금(2순위 청약시)	
	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배우자 신청시 공통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①배우자 입증서류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표등본 -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신청시 공통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임.	①위임장	양식 청약장소 비치
	②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③본인(청약자) 인감도장	
	④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공급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SH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문 공고나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SH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8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는 **일반분양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분양 세대수의 2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지역우선공급을 적용 및 주택형별 일반분양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표4>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SH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의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함.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SH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함.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는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 확인서류를 비교하여 적격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당첨 처리하며 그에 따른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등의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단, 기관추천 특별분양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대상 제외(신청시 기재됨)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SH공사 분양팀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계약체결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일</li> <li>- 일시 : 2015.05.22(금) 17:00 이후</li> <li>- 장소 :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 시스템 →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li> </ul>	2015.06.09.(화)~06.11(목) 09:30~17:30 (장소 : SH공사)	2015.07.27.(월)~07.29(수) 09:30~17:30 (장소 : SH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분양(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및 전체 당첨자 (특별 및 일반분양) 동 · 호수 배정 발표일</li> <li>- 일시 : 2015.06.05(금) 17:00 이후</li> <li>- 장소 : 공사 홈페이지 및 내일신문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위는 신문게재 제외)</li> </ul>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발표이후 당첨자 발표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 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배정발표후 계약체결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일반분양만 해당) 및 순위는 당첨자 명단 발표시 공사 홈페이지에 함께 발표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5항에 특별분양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분양 당첨자 선정 일시와 동 · 호수 배정 결과 발표 일시가 상이함.

### ■ 당첨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청약통장 가입자
인 터 넷 확인방법	SH공사홈페이지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제공일시 : 2015.06.05(금) 17:00 이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제공일시 : 2015.06.05~06.14(10일간)]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당첨사실조회 [제공일시 : 2015.06.05~06.14(10일간)]
전화(ARS) 확인방법	☎1588-9999(서비스코드 : 9+1+3+주민등록번호) [제공일시 : 2015.06.05~06.14(10일간)]	☎1369(서비스코드 : 5# + 주민등록번호#) [제공일시 : 2015.06.05~06.14(10일간)]
	SH공사 콜센터☎1600-3456 → # → 주민등록번호 [제공일시 : 2015.06.05(금) 17:00이후]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간은 09:30~17:30 이나 적격 당첨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계약금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영업시간(09:00~16:00)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5.07.29(수)은 계약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계약체결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자산,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의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분양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무무는 당첨자에게 있으며,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정당)당첨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체결 가능.
- 당첨자는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기간(개별통보)에 소명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회·확인 후 청약내용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함.
- 계약금 고지서(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금 고지서 포함)는 계약 장소에서 적격 당첨여부를 확인 받은 후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금(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입주자격)을 취소함.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공통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내(2015.06.09~2015.06.11)에 관련서류를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 우편접수, 퀵서비스 배달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의 통지없이 부적격 처리하며 계약체결 불가함.(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특별분양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기관추천 특별분양 당첨자는 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		①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에 주소변동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	④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		⑤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li> <li>•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li> <li>•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 동의서 확인방법 :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센터서비스→공고및공지→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내 첨부파일 참조
다 자 녀 특별분양		○	①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②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③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인과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④한부모가족증명서 ⑤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⑥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최초가입일 확인
신혼부부 특별분양	○		①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③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④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일자 확인 필요시
		○	⑤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처리됨
	○	⑥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분양		○	①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②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 세대로 신청인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분양		○	③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미혼의 자녀 확인 필요시 제출(만19세이상 자녀 해당)
	○		④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5〉 참조	본인	• 신청인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①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표5〉 생애최초 특별분양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해 당 자 격	발급기준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생애최초 특별분양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본인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본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본인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여부 확인용 서류임[가구원별 세대원(세대주포함) 총 소득금액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임]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본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일반분양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①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②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에 주소변동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	④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직계존속	• 2007.12.31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의 경우 제출
		○	⑤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⑥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하여 제출
		○	⑦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직계존속	
		○	⑧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⑨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⑩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서 확인방법 :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고객서비스 →공고및공지→'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내 첨부파일 참조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시 추가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비고
본인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자 구비
배우자	① 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	신청장소에 비치
	② 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구비
	③ 본인(청약자) 인감도장	
	④ 본인(청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지참 ② <b>계약금 납부영수증(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영수증 포함) 원본</b> [계약금 고지서는 계약 장소에서 직접 수령 후 지정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 은행)에 납부] ③ 당첨자 인감도장
대리인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으로 간주	① <b>계약금 납부영수증(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영수증 포함) 원본</b>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분양주택(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③ 당첨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에 비치) 1통 ④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감도장 지참 ⑤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지참

## 10 중복청약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내 세대구성원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및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호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일반공급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중복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나, 먼저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기타특별(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우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분양(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분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호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

- 특별분양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호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예시 : 다자녀, 노부모부양(세대주만가능),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분양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 ■ 특별분양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분양 신청이 불가하며, 낙첨시는 일반분양에도 신청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 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특별분양(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기타 특별분양 포함)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당첨될 시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처리됨.

## ●●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 입주자저축계좌의 재사용이 불가
  -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신청·계약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입주자저축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을 신청·계약한 경우
  - 서류결격 또는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 수도권 비거주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주택공급관련법령에 위배될 경우
-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된 재당첨자 자격확인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저축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의 제9항에 의한 소명기간(SH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아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입주자저축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2조의2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1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 ●●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편의시설 설치는 공정상 2015.07.29(수)까지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편의시설 설치가 시작되므로 신청 후 취소나 변경 절대불가.
-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선택 시 추가비용 없이 시공됨.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이상 휠체어 사용 노인, 3급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호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시 공급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분양주택(아파트) 주동 출입구에 음성유도신호기가 설치됨.
- 준공 시까지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기간이 촉박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해당부분의 시공이 진행 중일 수 있음.

구 분	선택사항		신청대상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기성제품 경사로 적용)	만65세이상 휠체어 사용 노인, 3급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중 하나로서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공용욕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신청시기	신청시 구비서류
주택분양 계약시	① 장애인 수첩, 관련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12 입주자(계약자)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안내

- 입주 후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방문제도를 실시함.
-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일정

사전점검방문일(예정)	입주지정기간(예정)
2016.02.13.~02.14	2016.03.17.~5.15

※ 상기 일정은 준공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확정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입주지원센터는 입주개시 7일전, 관리사무소는 입주개시 14일 이전에 개소하며, 개소 전에 입주개시일 및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함.(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3 단지 주변여건 및 유의사항

### ●● 단지 및 주변여건

#### ■ 단지 여건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102동, 103동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수 있음.
- 101동 및 105동 일부 세대 1층에 부대 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수 있음.
  - 101동 1층-보육시설, 105동 1층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 하거나 용이하지 않을수 있으며, 저층부(1,2층) 세대의 경우 조경식재, 시설물등으로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지상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이삿짐 차량은 비상차량 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상계동 공공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Social Mix)로, 101동, 104동, 105동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동에 함께 배치되어 있음.
- 104동 1,2호 라인의 경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라인에 혼용되어 있음
- 101동~105동의 필로티 설치구간은 소음,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등으로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105동은 저층 옥상으로 인해 소음,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등으로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01동에는 2~3개층, 102동~105동 하부 일부에 2개층의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음.
- 상계동 공공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이나 보의 위치는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세대여건에 따라 발코니에 기둥이나 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천장 마감 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59㎡, 84㎡형의 욕실은 습식 공법으로 시공되어있음.
-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인 입면 및 평면다양화에 따라 59A, 84A, 84C형 세대의 일부는 오픈발코니형으로 계획되어 동일평형 동일 타입임에도 다음 세대에는 발코니 확장이 안된 오픈발코니형 세대로 공급되므로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01동 13호라인 11~13층 59A-오픈발코니형, 16호라인 12~15층 59A-오픈발코니형
  - 102동 2호라인 9~12층 84A-오픈발코니형
  - 103동 3호라인 5~8층 84A-오픈발코니형
  - 105동 4호라인 12~15층 84C-오픈발코니형, 7호라인 11~13층 59A-오픈발코니형
  - **확장형 : 비확장형(오픈형발코니)세대 이외 모든 분양세대**
- 102동,103동의 경우 복층형 하부세대의 천장이나 상부세대의 바닥의 일부가 상부세대의 실외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 경관을 위한 구조로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임. 임의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대상평형 : 84D(복층)
- 복층세대는 층고가 높으므로 거실등 교체, 커튼설치 및 청소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야 하고, 안전에 유의해야함.
- 평면유형 84D형은 복층형 세대로 일반세대에 비해 천정고가 높아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평형은 선택품목인 전기복합오븐 선택시 가스쿡탑 밑 하부장에 설치됨.
  - 대상평형 : 59A, 84A, 84B, 84C, 84D
  - 단, 84B타입은 전기복합오븐과 식기세척기를 함께 선택시 식기세척기가 우선적으로 가스쿡탑 밑 하부장에 설치되며, 식기세척기만 선택시에도 이와 동일함.
- 84B타입 발코니에 냉장고 설치시 문개폐등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드레인 배수관(물빠짐)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세대 안방 에어컨설치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해야됨(중문 미설치). 에어컨 실외기 작동시 외부 창호를 개방후 사용해야 하며 소음 진동이 세대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적산열량계 및 가스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임.
- 복층세대(84D)는 난방 온수분배기가 노출될 수 있음(상층)
- 지하주차장 입구의 층고가 2300MM로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착물 설치차량,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저층세대 및 단지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연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배수펌프 가동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하1,2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하부층 주차된 차량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통로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05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음.
-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또는배관)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되어 설치됨.
- 어린이놀이터기구, 운동기구 등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간에 설치되는 우배수 선흡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 녹지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경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 (광고탑, 에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함.
- 세대분전반과 통신 통합단자함은 일체형으로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장비설치 및 누전차단기 작동점검시 신발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함.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됨.(단 복도식의 경우 복도에 접한 부분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저층세대 및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자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장소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 설비는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야간의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대피공간, 침실 확장부분 및 일부 발코니 내부 마감선이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최상층 발코니 또는 외부에 접하는 발코니 천정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낮음
- 세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시스템은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수 있음.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노출로 설치된 환기장비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 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의 냉장고 및 세탁기등의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 발코니에 드럼세탁기 설치시 내경 협소로 배치조정이 필요하니 청약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함.
- 세대 내 주방부위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주방가구,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는 단위세대 평면형태에 따라 다소 규격에 차이가 날 수 있음.(59A형은 드레스룸장,화장대 미설치)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음.
- 비상차량 출입시 도로 협소에 따른 혼잡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구획된 주차구획은 확장형주차[2.5m×5.1m] 구획은 설치 되지 않았으나 전체 주차구획을 일반 주차구획크기(2.3m×5.0m)보다 큰 주차구획[2.4m×5.0m]으로 설치됨.
-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층 아파트 주동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 서울시 경관관리자 자문, 공공건축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 심의를 거치며 저층고밀형 아파트에 생태면적률 30%이상을 만족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지상에 주차시설이 없는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 단지내 지상주차를 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 제한(2.3M)에 따라 지하주차차 차량에 따라 불가할수 있음( 예, 화물차, 대형SUV, 소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등)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 주차구획은 지하주차장에 1면 설치되어 있어 주차 차단기를 상가 이용자와 같이 사용 하도록 설치되어 있음
- 아파트 전실 및 복도 등에 설치된 소화배관, 피로티 천정 및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에 동결·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 열선이 설치 되어 있으며, 시설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건축심의 의견 및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에 따라 저층고밀형 아파트형태로 시공되어 동 배치 및 동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량 차이로 건물에 음영이 발생할수 있으며, 공용면적이 많은 형태의 주거단지임.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 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103동(1호라인) 하부(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수 있으며, 103동 입주자는 근린생활시설 사용자와 아파트 출입구 및 공용부(엘리베이터, 계단실)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 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각동 아파트 지하1층 엘리베이터홀 옆에 창고가 구획되어 있으며, 창고내 내부시설(선반,칸막이등)은 설치되지 않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 용
어린이놀이터	1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휴게소	1개소
야외운동기구	1개소
단지내 상가	1개소

**• 단지서측 : 목재웬스, 단지서측외 : 생활타리로 조성됨**

- 101동, 102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101동에 보육시설 남측에 유아놀이터가 위치함.
- 103동, 104동, 105동 사이에 휴게소가 위치하고, 105동 일부 남측에 야외운동기구가 위치함.
- 105동 일부 및 노인정 남측에 텃밭이 위치함.

**■ 주변여건**

- 단지 북측으로는 마들근린공원(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노원에코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벌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으로는 당현천이 흐르고 있으며, 벌레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측 당현천 산책로 건너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및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 남측 완충녹지(기부채납 부지) 외부에 한국도시가스, 대륜E&S등의 가스공급시설이 위치되어 있고, 천주교 중계동성당, 노원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음
- 서측 성모자에 보육원, 상이군경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상계마을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동쪽으로 0.6km 거리에 중계역(7호선) 및 동일로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서쪽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으며, 0.5km 거리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북동쪽으로 1km 거리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북동쪽으로 1.7km 거리에 롯데백화점 노원점, 남쪽으로 0.8km 거리에 건영옴니백화점, 동남쪽으로 1.2km 거리에 2001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동쪽으로 1.5km 거리에 롯데마트, 남동쪽으로 1.2km 거리에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덕릉로에 이르는 0.2k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동쪽으로 1.5km 거리에 노원경찰서, 남동쪽으로 1.5km 거리에 노원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입구에서 북동쪽으로 0.5km 거리에 로보카폴리 어린이교통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측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설비중 긴급상황시 대기로 가스를 방출하는 방산탑(25m)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남측에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여 있어 발전소에 설치된 굴뚝을 통해 대기로 하안연기를 배출 하며, 일부시기에는 이와 관련하여 냄새가 날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위치한 북부기술교육원 및 성모자애보육원등에서 소음, 냄새, 분진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대지는 기존의 가스공급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한 사업임.
- 기존 가스공급시설인 대륜E&S를 대지 남측으로 이전후 아파트 주동을 위험시설물로부터 50M이상 이격하여 계획함.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서측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101동 일부세대들은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수 있음.
  - 관련 계획에 의거 단지서측에 조성되는 단지내도로는 부지남측시설과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로 조성되었음.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북측도로와 접하여 단지내 공간의 일부를 보도로 조성하였음.
-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대지 북측에 기존 10m도로를 14m로 확충하여 일부 대지를 기부채납 (SH공사에서 기부채납)
-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대지 남측에 20m녹지 및 15m도로를 신설하여 일부 대지를 기부채납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
-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변 생활환경이 변동될 수 있음

• 학교이용안내

학 교	학교명	위 치	비 고	해당 교육청
초등학교	서울 상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43	상계6,7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02-3499-6912)
중학교	서울 노일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31길 24	북부2학교군	
	서울 상원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182		
	서울 상경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27길 61		
	서울 온곡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2		
	서울 신상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6길 42		
	서울 상계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98		
	서울 노원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3길 26		
	서울 청원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06		
	서울 수락중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29		

※ 학생수용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건본주택운영기간,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내에 출입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단지 외곽에는 담장 설치를 하지 않음.
- 남측에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고 있어 사업대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거 노원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 후 자원회수 시설 가동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에 신규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기 적립된 주민지원기금(서울시)의 활용, 주민지원협의체 참여 등에 대해 기존 아파트 6,190세대의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함.**
- 팜플릿상 평면도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 (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 의거 계단실 창호를 폐쇄형으로 설치하였으며, 일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개폐가 가능하나,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는 창호가 전부 폐쇄형으로 설치되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견본세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각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주택 계약자의 경우 분양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음.
-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1층 희망자가 1층 분양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자도 1층에 배정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홈페이지 또는 팜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릿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시설마감은 자재품질, 제조회사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며, 동일 단지내 동일한 평면유형이라 할지라도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견본세대 및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기 바람.
- 견본세대 및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동·호수에 대하여는 도배, 마루, 가구문짝, 가구손잡이, 도장에 대해 재시공할 예정이며 상기 품목 이외에 대하여 교체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및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등의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설치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사이버 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가구류(침실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등)는 색상, 모양, 규격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는 모양, 규격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등은 동절기 결로로 인한 전원차단 등의 우려가 있어 벽부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101동 서측 단지 조경부지 내에 자애원 열수송 공급관이 매립통과 되어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명칭은 2015년 8월에 작명예정이며, 입주자는 시공사 브랜드의 사용을 SH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며, 동번호는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 질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팜플릿에 명기된 치수는 중심선 치수로서 건축법상 허용하는 시공오차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수 있고, 단열공사 및 마감공사로 인해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의 확장벽면 일부는 단열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며 벽체마감으로 인해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실별 치수에는 천정물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 등 평면상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SH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사용검사승인 이전에 구조변경 등은 불가하며,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른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벽체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 때 음식조리,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제습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지붕층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제외) 보육시설, 경로당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기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문주 및 경비실로 인한 일부세대는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의 동·호수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하므로 신청인이 주택의 방향, 평면 배치 등 아파트 배치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해야 함.
- 현재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전에 반드시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입주금(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선택품목금액 포함)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열쇠불출이 불가함. 또한,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열쇠불출이 불가함.**
- 잔금은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며 관리사무소 및 주거복지센터에는 납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하자관련 문의 및 하자접수는 입주지원센터 내 하자상담실(운영기간 : 입주개시 7일전~입주기간완료+30일) 및 하자119센터(운영기간 : 입주지원센터 종료후 180일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하자접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짐.(단지어건에 따라 운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관할 토지취득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주택구입시「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주택가격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세(2011.1.1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세는 계약자가 잔금 납부일과 건물(임시)사용승인일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구청에 분양계약서와 분양금납부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자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함.
- 공유대지 지분등기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확정시 공유대지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첨이후 공유대지지분 등기시까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주소변경요청이라는 제목과 해당 주택 동.호수, 연락처를 부기 기재하시어 팩스송부(팩스 3410-7503)하여 주시면 바뀐 주소로 공유대지지분이전등기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주소 변경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 건물보존등기 완료는 입주시작일로부터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2주 이내 등기소에 신청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2~6주 후에 완료됩니다. 일부 대출상품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실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납부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람.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신청은 건물보존등기 접수후에 발송하는 건물등기안내문을 받으신 후에 방문진행하시면 되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는 건물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교부할 수 있음.
- 상계동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혼합주택단지(Social Mix)로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2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에서 통합관리함.

## 14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및 기관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 산술평균 총액
한국감정원, (주)중앙감정평가법인	37,057,604천원

1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2. 신청인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3. 평가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향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리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옴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밀조건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에너지절약	중수도 설치	-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보행자 도로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
교통부하저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지역및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전용부분	-
사회적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법안전	방법안전 콘텍트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데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인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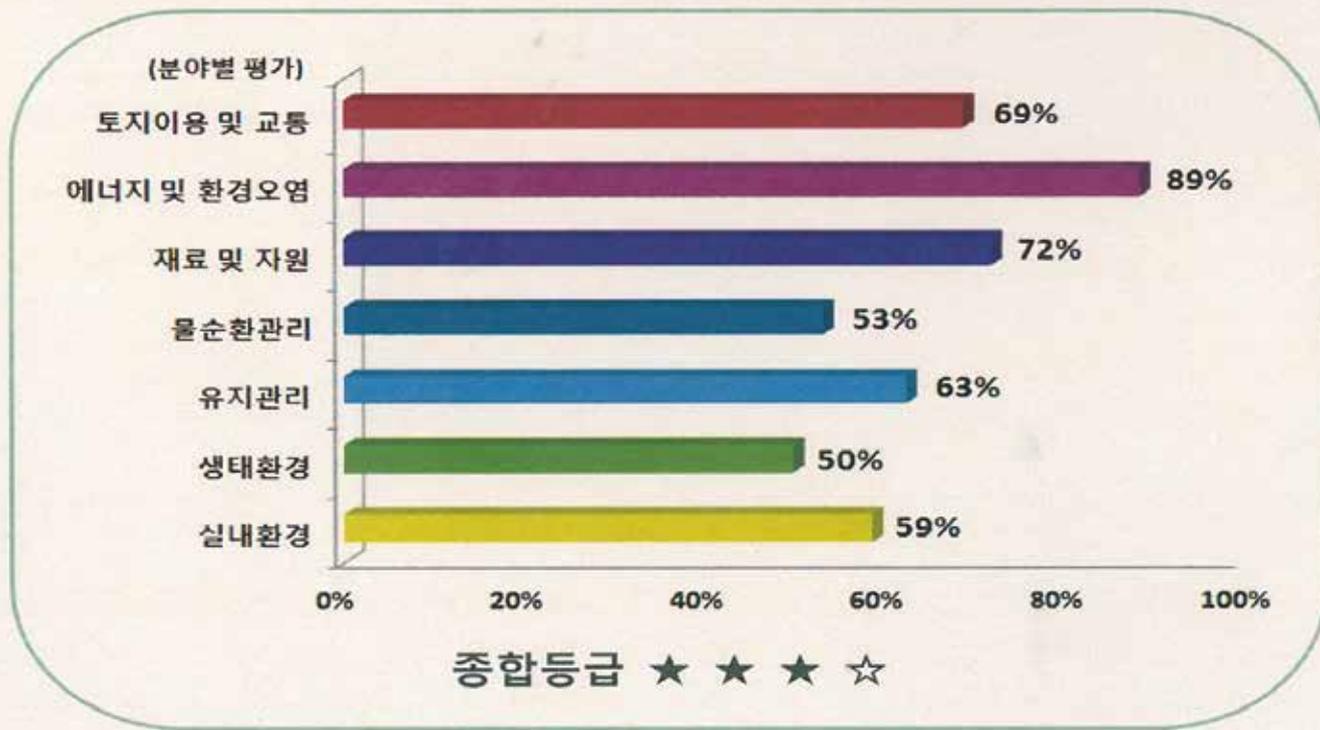
한국감정원

●●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건축주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준공(예정)일 : 2015.12.31.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2-91번지 일원 층수 : 지하2층, 지상7~15층 연면적 : 62,074.51㎡(457세대) 건축물의주된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4-184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4.12.24.~사용검사일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고시 제2013-84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한국감정원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6 견본주택 운영안내

### ■ 견본주택 운영

- 견본주택 운영기간 : 2015.05.09(토) ~ 2015.05.11(월) 10:00~17:00

단지명	타입	동·호수
상계동	59A	101동 301호 (평면유형이 같은 임대호수임)
	84B	102동 304호

※ 상기 기간이외에는 견본주택을 개방하지 않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개방되는 동·호수에 대하여는 입주이전 마감재 훼손부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은 2015.05.07.(목), 13시부터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분양 → 사이버모델하우스

### ■ 견본주택 운영장소 및 SH공사 위치 안내



- 운영장소 : 상계동 101동 301호, 102동 304호
  - 승용차(내비게이션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712-91
  - 중계역(7호선) ⑥번 출구에서 당현천방면 500m
- ※ 견본주택 운영장소 주변 주차여건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내비게이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지하철3호선 대치역 하차 ⑧번 출구(SH공사 지하1층으로 연결)
  -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하차 ④번 출구(도보로 10분 거리)
- ※ 청약 신청장소 주변 주차여건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정	신청장소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	2015.05.07.(목)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한국일보, 서울신문	
건본주택 운영기간	2015.05.09.(토)~ 2015.05.11.(월) (10:00~17:00)	· 운영장소 : 상계동현장 - 59㎡ : 101동 301호 - 84㎡ : 102동 304호	
특별분양 청약접수	기관추천특별분양	2015.05.13(수) ~05.14(목)	· SH공사 분양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다자녀 특별분양	2015.05.13(수)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공사 분양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신혼부부 특별분양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2015.05.14(목)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공사 분양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생애최초 특별분양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2015.05.22(금) 17:00이후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일반분양 청약접수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	2015.05.27(수)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www.ap2you.com)
	2순위(1순위제외자)	2015.05.28(목)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보유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보유자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www.ap2you.com)
일반분양 당첨자 및 전체 당첨자(특별 및 일반) 동 · 호수배정발표	2015.06.05.(금) 17:00이후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및 내일신문 · www.ap2you.com · www.kbstar.com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2015.06.09(화) ~06.11(목)	· SH공사 분양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2015.07.14(화) 17:00이후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계약기간	2015.07.27(월) ~07.29(수)	· SH공사 분양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중도금 1차 납부기한	2015.09.25(금)		
중도금 2차 납부기한	2015.11.25(수)		
입주자 사전점검(예정)	2016.02.13.(토) ~ 2016.02.14.(일)		
입주예정시기	2016.03.17.(목) ~05.15(일)	· 잔금납부기한 : 2016.05.15(일)	

※상기분양일정은 건축공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SH공사 콜센터 : (02)1600-345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7일